

경남일보

HOME > 경제 > 농업/축산/수산

농업인 노후 책임지는 '농지연금'...지원제도 확대

강진성 | 승인 2022.03.22 16:21

지원 대상 만 65→60세 완화
30년 이상 종사자 추가 지급
연금 중복 가능·재산세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이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 제도개선으로 기존 가입 연령은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상으로 확대 됐다. 또 30년 이상 농업 종사자에게는 월 지급금의 5%를, 저소득 취약계층 농업인(생계급여수급자)에게는 월 지급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사업이다. 농지연금은 만60세 이상의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면적에 제한은 없다.

또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은 농지담보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 전에도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나의 미래 농지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법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매월 동일금액을 받는 정액종신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형 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 지급가능액의 30%내에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수시인출형으로 구분돼 있다. 한편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 등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이외 농지연금의 장점으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 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가입 당시 만60세 이상이라면 승계하여 받을 수 있다.

또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게다가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대표전화(055-760-2536)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농지은행포털을 방문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진성